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5635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김재인, 정우일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남은지

변론 종결2021. 11. 25.

판결 선고2021. 12.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3. 3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과 피고와 소외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3. 3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소외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각 하고, 소외 E의 파산관재인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채권

-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9. 7. 6.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① 일반대출로 42,000,000,000원을, ② 종합통장대출로 10,000,000,000원을 각 만기일 2011. 7. 6., 이자율 연 11%(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위 각 대출의 만기일은 최종적으로 2016. 6. 6.로 연장되었다(이하 ①번 대출을 '이 사건 일반대출'이라 하고, ②번 대출을 '이 사건 종합대출'이라고 하며,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소외 H은 2009. 7. 6. 이 사건 일반대출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54,6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종합대출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3,0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4. 9. 3.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63,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4)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20년경 G, C, D,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1999호로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8. 13.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G, C, D,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789,851,088원 및 그 중 29,453,657,855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H, C는 각 67,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D은 63,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5) 원고의 G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2020. 2. 18.경을 기준으로 하여 원리금 합계 81,515,634,824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의 C 및 D에 대한 각 채권

1) 피고는 2012. 12. 10. C에게 2,692,070,000원을 변제기 2013. 12. 9.까지, 이자 연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와 G은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피고와 C, D, G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56986 대여금 사건에서 'C, D, G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024,090,040원 및 그 중 2,692,070,000원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C 및 D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등

1) C와 피고는 2020. 3. 30. 'C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2019. 9. 4. 확정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D과 피고는 2020. 3. 30. 'D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2019. 9. 4. 확정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A의 파산선고

한편,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및 D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에 기한 연대보증채권이 있는데, C 및 D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취소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C 및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C는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20. 3. 30.을 기준으로 C에 대하여는 67,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D은 63,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C 및 D의 무자력 여부

1) C의 무자력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가치는, 그때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신탁보수,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신탁보수, 분양에 따른 수익금,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익 등을 산정하여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에서 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한 후 다시 수익한도금액 내에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신탁계약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신탁계약 당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4, 15, 16, 17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남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는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67,600,000,000원, 피고에 대하여

7,024,090,040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2020. 12. 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자산총계 28,775,849,927원, 부채총계 75,480,874,652원으로서 자본총계가 -46,705,024,725원이었고, 미처리결손금이 48,005,024,725원인 점,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C에 대한 재산세 부과 내역은 모두 C가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신탁한 부동산과 관련된 내역으로 위 신탁 재산 외에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신탁재산은 일반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C는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건물 제지층 M호, 서울 강남구 N 외 11 필지 O건물 제1층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등의 부동산을 J에 신탁하여 상당한 가액의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가 2009. 5. 11. J에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Y 외 6필지 지상 Z 건물 중 AA호 등 여러 호실에 해당하는 각 부동산, 서울 N 외 11 필지 지상 건물 중 제1층 AB호 등 여러 호실에 해당하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신탁계약상 신탁원본의 가격은 38,410,000,000원인데, 우선수익자들의 수익증권으로 소외 AC은행이 1순위 우선수익자로 3,155,100,000원(이후 우선수익자가 소외 AD은행으로 변경됨)을, A이 2순위 우선수익자로 67,600,000,000원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후 C가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각 신탁부동산들이 공매 절차를 통하여 환가되어 정산되었는바, 일부 공매 절차가 완료된 부동산으로 2020. 2. 18.경 제1 우선수익권자인 AD은행에 대한 채무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신탁계약부터 현재까지의 공매결과와 향후에도 처분결과가 나아지리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C가 J에 신탁한 부동산들은 그 수익이 선순위 비용이나 우선수익자들의 채무를 충당하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C가 적극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은 일반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D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강남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63,100,000,000원, 피고에 대하여 7,024,090,040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2020. 12. 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자산총계 5,344,908,750원, 부채총계 977,706,454원으로 되어있고, 위 부채총계에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에 대한 부채를 포함하면 D의 부채는 합계 64,077,706,454원(=977,706,454원 + 63,100,000,000원)으로 자본총계가 -58,732,797,704원(=5,344,908,750원 - 64,077,706,454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D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과세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도 D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D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대상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은 C 및 D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C 및 D의 무자력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 및 D이 다수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인 H의 배우자이고, 199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C의 이사로, 1998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D의 이사 또는 감사로(2005. 7. 22.부터 2007. 11. 29.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 각 재직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C 및 D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 및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각 양도하고, E의 파산관재인 F에게 그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석근

판사조용희

판사남민영

별지

1) 원고는 소외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하였으나 E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I 주식회사였다가 2015. 4. 30.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